

의안번호	제2829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8. 27.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2829호
----------	--------

제출연월일: 2024. 8. 27.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나.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3. 위탁내용

- 가. 위탁 대상: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 나. 위탁 기간: 2025. 1. 1. ~ 2029. 12. 31.(5년)
- 다. 선정 방법: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1)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

※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 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

라. 위탁사무내용

-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마. 소요예산: 56,712천원 정도(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내시 기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요자(보호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민간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등의 유연한 대처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양육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행정 주도의 서비스 공공성보다 민간의 다양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해당 사무는 비영리사무로 양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와 보호자를 위하여 공공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동시에, 특색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시설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단체 위탁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성이 기대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서비스 이용률, 예산의 집행률,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

자의 운영능력 등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의 정산, 예·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5. 위탁사유: 민간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활성화 제고

6. 기대효과

- 가. 민간 전문업체 선정·운영으로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제공
- 나. 지역내 민간단체 선정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와 부모·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기대

7. 추진일정

- 가. 민간위탁 공고 및 접수 : 2024. 10.
-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4. 11.
- 다. 수탁기관선정 : 2024. 11.
- 라. 협약체결 : 2024. 11.
- 마.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준비 : 2024. 12.
- 바. 위탁운영 : 2025. 1.

-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관련법령 1부.

등록번호	교육청소년과-23384
등록일자	2024. 8. 26.
결재일자	2024. 8. 26.
공개구분	비공개(5)

보육돌봄담당	교육청소년과장	행정복지국장	부군수	군수
김민정	천미옥	최낙창	박성준	2024. 8. 26. 이상근
협조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주무관	최대석 조형래 최미혜	행정담당 인사담당	김민정 박남숙

 고성군 새롭게 주민이 힘나게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안)

개 요

- (위탁대상)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 (위 치)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 (위탁기간) 2025. 1. ~ 2029. 12.(5년)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소요예산) 56,712천원 정도(국50%, 도15%, 군35%)
- (수탁자 심사 및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추진방법 및 절차) 공개모집
 - 공개모집 공고 → 서류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고 성 군
(교육청소년과)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계획(안)

- 2025. 1월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개원에 따라 위탁체 선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하여 돌봄기능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격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 공동육아나눔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체의 사업추진능력 고려·선정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면적	종사자	공간내용	비고
고성군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	92.46㎡	2명 (전담1,보조1)	양육 관련 정보 공유 및 열린 공동체 공간, 수유실 등	

※ 2024.12. 준공 / 2025. 1. 개소 예정

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2338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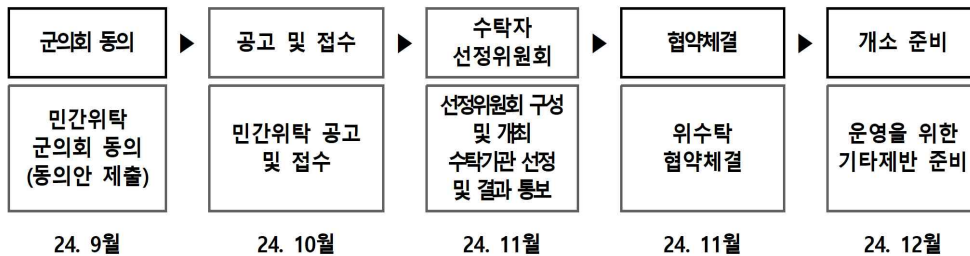
- 위탁기간: 2025. 1. 1 ~ 2029. 12. 31.(5년)
- 위탁내용: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관리·운영
- 소요예산: 56,712천원 정도(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내시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운영비			비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56,712	28,356	8,507	19,849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선정방법: 공개경쟁
 - 공개경쟁 → 서류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심의
 -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다득점 위탁체
 - ※ 70점 미만시 재공고 실시, 동점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탁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 및 기타 관계법령,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

IV**세부추진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4. 9월 임시회

 모집공고(예정)

- 공고(안): [붙임 1]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보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
 - ※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단체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 차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함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 접수

- 접수장소: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보육돌봄담당
- 접수기간: 접수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 2]
 - 제출부수 서면심사(10권), 면접심사
 - ※ 평일 9:00~18:00까지 접수하며, 평일 12:00~13: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기타사항: 위탁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 위탁체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행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심사항목

구분	계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비고
배점	100	30	50	20	

- 세부심사기준: [붙임 3]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 면접은 운영계획 등 설명(7분 이내)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접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선정
 - 신청자 모두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①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②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과 통지 및 위탁계약

- 선정결과 통보: 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위탁계약 체결
 - 주요 내용: 위탁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제출
 - 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결정

V

행정사항

- 2024. 8.: 고성군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위탁체 선정계획 수립
- 2024. 8.: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4. 9.: 위탁체 모집 공고(20일간) 및 신청서 접수
- 2024.10.: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
- 2024.11.: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

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